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 화투놀이 또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의 게임물 사행화(불법환전)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해 신설된 규제(대통령령 제24865호, 2013. 11. 20. 공포, 2014. 2. 23. 시행)가 2026.

1. 1. 일몰제 기한 도래에 따라 규제를 재검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의 1개월간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안 별표2 제8호가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실시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가목 중 “7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연 락 처	(044) 203 - 2443